

보도시점 2024.4.29.(월) 12:00
(2024.4.30.(화) 조간)

배포 2024.4.29.(월) 09:00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의 전문성·투명성 획기적 제고

- ▲평가위원 상피제 축소와 ▲평가위원 실적점수제(마일리지제) 도입을 통해 우수 전문가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토록 유도
- ▲과제 신청자에게 점수, 등급, 종합평가의견 제시를 통해 상담 기회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이하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4월 23일 제5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표준지침) 과기정통부가 개별 부처에서 소관 연구개발과제 평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지침으로서, 부처는 소관 과제 평가 또는 평가지침 마련 시 표준지침의 취지나 내용을 고려해야 함(연구성과평가법 제13조)

그동안 평가대상 과제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동일대학 출신 제외 등 과도한 상피제 운영과 평가위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로 인해 해당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평가에서 배제되거나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또한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통보할 때 당락여부 등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여 과제 신청자는 왜 탈락했는지, 누가 평가했는지 알 수가 없어 평가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23.11.27. 전원회의), 「R&D다운 R&D」('24.4.25. 전원회의)에서 평가위원 구성 및 관리체계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표준지침에는 이를 구체화하여 반영한 것이다.

먼저, 보다 많은 우수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평가위원의 참여 제한 범위를 현행 동일 대학 등에서 최하위단위의 동일 부서(학과, 학부 등)까지 축소하였다.

※ 동일기관 상피제 폐지(동일기관 → 동일부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명문화 예정('24년)

상피제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과제평가위원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표준 서약서를 제시하였다. 평가위원은 행동강령에 따라 이해상충 행위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해상충 위반 사실을 소관 부처(연구관리 전문기관)에 고지하고, 참여하지 않도록 하였다.

* (행동강령 내용) ①평가위원의 의무(사전검토, 서약서 제출), ②이해상충 기준(금전적/직무적/인적 관계), ③위반 시 패널티(평가위원단 활동 제한) 제시

또한, 우수평가위원 발굴 및 평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평가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평가위원 마일리지제’의 추진 근거를 명시하였다. 누적 마일리지가 높은 우수 평가위원은 과제 기획·평가단 구성 시 우선 추천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포상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이하 ‘IRIS’)에 적용을 거쳐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평가의 투명성 및 평가위원의 책무 강화를 위해 평가 결과(점수, 등급, 종합평가의견)와 평가위원 명단을 과제 신청자 등에게 공개한다. 과제평가단의 종합평가의견에는 탈락 사유, 미비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추후 과제 신청을 하거나 다음 단계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컨설팅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표준지침 개정 사항은 IRIS와 각 부처·전문기관의 사업 관리 지침과 평가계획 반영을 통해 현장에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기관·사업 특성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부 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상윤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R&D 평가 전문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위원 구성 및 관리체계,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였다. 표준지침 개정 사항이 연구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행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성과평가정책국 연구평가혁신과	책임자	과 장	조경옥 (044-202-6930)
		담당자	사무관	사공영은 (044-202-6936)



1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위원 제척기준 적용 최소화

- 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제척기준은 필수 제척대상 (과제 당사자) 위주로 적용하고 선택적 제척기준* 적용 최소화

* 친족, 상호간 평가자, 동일기관 재직자, 소관 공무원 및 전문기관 임직원

-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기관에 소속된 평가위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척기준에 대해서는 대학, 출연연, 과기출연연, 특정연의 최하위단위 부서(학부, 학과 등)까지 한정하여 제외 적용

※ 동일기관 상피제 폐지(동일기관 → 동일부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문화할 예정('24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피 범위	(원칙) 동일 기관 (예외) 동일 부서	(원칙) 동일 부서* *학과, 학부 등 최하위 단위 부서

2 평가위원 행동강령 마련 및 운영 [【참고2】](#)

- 제척기준 완화에 따른 이해상충행위 예방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평가 위원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행동강령* 도입 및 평가위원 서약서 제시

* (내용) ①평가위원의 의무(사전검토, 서약서 제출)와 ②이해상충 기준(금전적/ 직무적/인적 관계), ③위반시 패널티(평가위원단 활동 제한 등) 제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해 상충 예방	상피제의 엄격한 적용	평가위원이 행동강령에 따라 이해상충행위 주의·고지

③ 과제평가 결과 공개 강화

- 평가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와 평가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각 평가 단계(선정, 단계, 최종)별로 피평가자에게 평가점수·등급과 평가위원 명단 및 종합평가의견 등 평가결과 통보(IRIS)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평가결과	점수·등급, 종합평가의견	⇒ <u>평가위원 명단</u> 점수·등급, 종합평가의견*

* (종합평가의견) 평가위원별 평가 의견이 아니라 **과제평가단 전체의 의견**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작성(탈락사유, 미비점 등)하여 피평가자에 대한 컨설팅 기회 제공

④ 평가위원 마일리지제 및 인센티브 도입

- 우수평가위원 발굴 및 과제평가단 참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위원 마일리지 부여
- 누적 마일리지가 높은 우수 평가위원은 과제 기획 및 평가위원으로 우선 추천 및 정부 포상 수여 등의 인센티브 부여

※ 상세설계 및 IRIS 시스템 적용('24.하반기 예정)을 통해 마일리지제 본격 운영('25)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평가위원 평가	일부 부처·기관 평가위원 평가제 운영	⇒ 범부처 평가위원 마일리지제 운영

- (평가위원 행동강령) 제척기준 완화 적용에 따른 이해상충 행위 예방을 위해 평가위원 행동강령 및 서약서를 사전 작성
- (적용 범위) 국가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모든 평가위원에게 적용
- (평가위원 의무) 평가위원은 피평가자와 평가위원간의 이해상충 관계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이해상충 관계확인 및 고지·회피 의무가 포함된 서약서 제출
 - ※ 부서 검직 등으로 인해 이해상충 관계가 발생한 경우도 해당사실을 고지
- (이해상충의 기준) 평가위원은 피평가자와 평가위원간의 금전적/직무적/인적 이해상충의 관계 여부를 확인

< 평가위원 이해상충의 기준 >

구분	기준
금전적	• <u>최근 3년 이내 금전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 또는 향후 예정인 경우</u> • 피평가기관의 주식 또는 신주예약권 보유한 경우
직무적	• <u>평가위원이 해당 과제에 공동 또는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u>
인적	• 최근 3년 이내 공동연구, 사업 관계 경험, 고용주 및 상사 등 고용 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 • 사제관계(지도교수-대학(원)생) 등 이와 유사한 밀접한 관계의 경우

* 표 내의 밑줄은 필수 사항, 과제의 특성과 평가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이해상충의 기준 적용 기간은 최근 3년간을 대상으로 함

- (위반시 조치) 평가위원이 이해상충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시 과제 평가에 평가위원으로서 활동을 제한

[참고] 이해상충 방지 및 청렴·윤리 서약서(안)

< 평가위원 이해상충 방지 및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 >

본인은 “과제명”에 평가위원으로서 참여함에 있어 피평가자 및 기관과 금전적/직무적/인적 이해상충의 관계가 없으며, 이해상충 관계에 있을 시 평가 전문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이해상충의 관계가 발생할 시 이해상충의 관계를 회피할 것과 과제평가단 위원으로서,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시, 평가위원 자격 박탈은 물론, 동 평가행위에 따른 제재와 손해배상,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입니다.

< 이해상충의 유형별 정의 >

금전적 이해상충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이 연구 등 본연의 임무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직무의 충돌	연구자로서의 연구활동 등 고유 직무 외 역할(자문, 창업, 봉사, 외부활동 등) 수행이 연구자로서의 고유 임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인적 이해상충	연구자의 개인적 친분이나 갈등 등 사적인 인간관계가 연구수행, 평가,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이해상충 관계 확인 및 청렴·윤리 실천 서약 >

- 본인은 최근 3년 이내 금전적인 이익 취득 또는 향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본인은 해당 과제에 공동 또는 참여연구자로 참여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 본인은 피평가자(또는 평가기관)와 최근 3년 이내 공동연구, 사업 관계 경험이 없습니다. ☐
- 본인은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성실하게 질의와 답변을 한다. 또한, 규정에 따른 평가 내용 녹취 및 평가결과 공포시 평가위원 명단 공개에 동의합니다. ☐
- 본인은 평가과정에서 평가대상 기관과 발표자를 존중하며, 이들의 명예나 자존감을 훼손할 만한 일체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
- 본인은 평가수행을 통해 평가 대상 과제가 최고의 성과가 창출 될수 있도록 전문적인 질의·답변과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본인은 본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 연구과제 정보, 연구책임자, 평가점수 및 기타 평가 주관기관의 장이 비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평가 중은 물론 평가 종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 본인은 본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되는 순간부터 평가결과가 안내되는 시점까지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피평가자(기관), 평가위원 등 평가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와 직간접적(온/오프라인 등)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

< 피평가자 현황 >

연번	연구책임자 명	소속 기관	소속 부서
:	:	:	:

20 . .

소속기관: 소속 부서 : 직급 :

성명: (서명)